



대한민국 관광기업 화이팅!



코로나19로 고통받는
대한민국의
모든 관광 기업들에게
힘이 되겠습니다



문화체육관광부

코로나19대응 관광기업 지원안내

금융을 지원하겠습니다



1 관광기금 신용보증부 특별용자

[대상]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신용 1~8등급 관광사업체

* 대기업, 중견기업,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용자대상에서 제외

[지원내용] 사업체 운영비(인건비, 임차료 등) 특별용자(총 1,000억원 규모)

- (용자금리) 1.0% / (지원한도) 2억원 내 / (상환기간) 3년 거치 3년 상환

* 신속 집행 위해 영업점 인력파견(2.17.~, 10명) 및 보조인력 배치(3.2.~, 50명), 용자집행 주기 축소(3.3.~, 주1회→주2회) 등을 조치하였음

[접수기간] '20.2.19.(수) ~ '20.11.30.(월)

[신청절차] 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 전화·온라인예약 후 방문접수, 이후 용자금 신청은 '20.12.11.(금)까지 NH농협은행 영업점에서 완료해야 함

[담당기관] 신용보증재단(1588-7365), 한국관광협회중앙회(02-2079-2446~7)

* 각 지역신용보증재단에 관한 영업점 문의 요망 (연락처는 11페이지 하단 참조)

2 관광기금 일반용자 운영자금 확대 및 조기지원

[대상]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(국내 및 국외여행업 겸업 등 40업종)

[지원내용] 기 시행중인 관광기금 일반용자 운영자금 확대(4,450억원→5,250억원)

* 특별용자(1,000억원)를 제외한 규모임

〈 관광기금 일반용자 지원내용 〉

- (용자금리) 대기업 및 중견기업(2.25%) 중소기업, 공공법인 및 개인(1.5%)
- (지원한도)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% (최대 신청 한도 : 30억원)
- (상환기간)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

[신청절차] 신청기간 내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광사업체 지원센터에 접수

* 2분기 접수기간 종료(~3.30.), 3분기 용자는 하반기에 접수 시작할 예정

[담당기관] 한국관광협회중앙회 (☎ 02-2079-2446~7, <http://www.ekta.kr/>)

* 시·도 및 업종별 관광협회를 통해서도 접수 가능

3 관광기금 융자원금 상환의무 유예

[대상] 관광기금 융자 원금을 상환중이거나, 1년 이내 상환일이 도래하는 업체

[지원내용] 1년간 원금 상환의무 유예 및 만기연장 (약 2천억원 규모)

* 원금을 상환중인 경우 상환유예, 1년 이내 상환일이 도래하는 경우 만기연장

[접수기간] 선착순 접수 중

* 유예 · 만기연장 총액(2천억원 규모) 소진 시까지 접수받으며, 소진 시 마감함

[신청절차] 旣대출 은행(각 취급은행 영업점)에 직접 신청

4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 및 융자상환유예

[대상] 주민등록상 제주도 내 3개월 이상 거주자(개인), 자본금 50억원 미만 이면서 공고일 현재 제주도내 본점 또는 지점등록이 된 업체(법인)

- (특별융자) 「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 · 관리 조례」 제4조 및 제6조에 해당하는 사업
- (상환유예)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을 받은 모든 사업자

[지원내용] 금리(0.75%), 경영안정자금 및 건설 · 개보수자금 융자

* 금리는 분기별 변동, 융자한도는 개인 6~12억원 이내,
법인 12~24억원 이내(업종별, 자금용도별 상이)

[접수기간] 특별융자(2.20.~5.18.), 상환유예(3.2.~5.18.)

* '20.6.30.(화)까지 거래은행에서 융자를 실행해야 하며, 미실행 시 자격소멸

[신청절차] 관광진흥기금 특별지원센터에 지원 (선착순)

* 상환유예는 거래은행과 상의 후 접수 (은행심사결과에 따라 유예여부 결정)

[담당기관] 제주웰컴센터 내 관광진흥기금 특별지원센터

☎ 064-740-6095~7/6084

5 소상공인 12조원 초저금리[1.5%] 금융지원 패키지

[대상]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모든 소상공인(신용 1~10등급)

[지원내용] 시중은행(신용1~3등급 대상, 기업은행제외), 기업은행(4~6등급 대상),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(4~10등급 대상) 등 세 기관이 분담해 총 12조원 대출

- (융자금리) 1.5%(세 기관 모두 동일)
- (지원한도) 시중은행 3천만원, 기업은행 1억원, 소진공 2천만원
- (상환기간) 시중은행 1년, 기업은행 최장 8년, 소진공 2년 거치 3년 상환

[접수기간] 접수 시작일 부터 예산소진 시까지·

-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: '20.4.1.부터 접수
-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: '20.4.1.부터 접수 ('20.4.6. 심사시작)
- 소진공 경영안전자금 : '20.3.25.부터 접수 (생년-날짜 훌짝제로 예약·방문 운영)

[신청절차] 각 담당기관에 문의 후 방문(소진공은 온라인 예약 가능)

[담당기관] 시중은행, 기업은행,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*

- * 기업은행 (<http://ibk.co.kr>)
- *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(<http://semas.or.kr/>, ☎ 042-363-7210/7230)

6 미소금융 창업·운영자금 지원

[대상] 저신용자(6등급 이하, 무등급포함) 및 저소득층(차상위계층 이하),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

[지원내용] 금리 4.5%이내, 최장 5년, 2천만원 한도 (총 4,400억원 규모)

구분	창업자금	운영자금	시설개선자금	긴급생계자금
대출한도	7천만원	2천만원	2천만원	1천만원
대출기간	6년 이내	5.5년 이내	5.5년 이내	5년 이내
금리	4.5%	4.5%	4.5%	4.5%

* 긴급생계자금은 기존 창업·운영·시설개선자금을 받은 자 중 성실상환자에 한해 지원

[담당기관] 서민금융진흥원 (☎1397)

7 긴급경영안정자금 신규융자, 만기연장, 상환유예

[대상] 코로나19 피해로 매출액이 10%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*

- * 「중소기업기본법」상 중소기업, 마스크 제조기업은 매출액 요건 미적용
- 다음 중 하나의 매출액 감소 기준에 해당해야 함

비교기간	예시('20. 4.14 신청)
① 신청 전분기 / 신청 전전분기	'20.1분기 / '19.4분기
② 신청 전분기 / 전년도 신청 전분기	'20.1분기 / '19.1분기
③ 신청전월 / 신청 전전월	'20.3월 / '20.2월
④ 신청전월 / 전년도 신청전월	'20.3월 / '19.3월
⑤ 신청 당월(추정) / 신청전월	'20.4월 / '20.3월
⑥ 신청 당월(추정) / 전년도 동월	'20.4월 / '19.4월
⑦ 신청전 1개월 / 전전 1개월	'20. 3.14~4.13 / '20. 2.14~3.13
⑧ 신청전 1개월 / 전년 동기간	'20. 3.14~4.13 / '19. 3.14~4.13

* 중국 내 최초 확진자 발생일('19.12.1) 이후부터 피해 기산.

[지원내용] 긴급경영안정자금 신규 용자, 기존 용자 만기연장·상환유예

- (신규용자) 금리 2.15% (변동금리, 단 특별재난지역 소재기업은 1.9% 고정금리), 기업 당 연 3억원 이내, 5년 이내 상환*(거치기간 2년 이내)
* 기업자율 상환제도 운영 (대출원금을 기업이 원하는 날짜에 자유로이 상환)
- (만기연장) 최소 상환요건(원금 25% 이상) 미적용, 가산금리 감면(0.5%p)
- (상환유예) 최소 상환요건(원금 10% 이상) 미적용, 유예기간 연장(6→9개월)

[접수기간] 경영애로 피해 발생(피해비교 가능시점) 이후 6개월 이내

[신청절차] 온라인 접수(www.kosmes.or.kr) 후 지역 본·지부 방문상담

[담당기관] 중소기업진흥공단 (<http://www.kosmes.or.kr>, ☎1357)

8 힘내라 대한민국 특별운영자금

[대상] 코로나19 등 재난 피해기업 (피해사실확인서를 통해 피해내역 입증)

[지원내용] 최대 0.6%p 금리우대, 중소 50억원, 중견 100억원, 1년 지원

[접수기간/신청절차] 5조원 소진시까지, 산업은행 영업점 방문접수

[담당기관] 산업은행 (<http://kdb.co.kr>, ☎02-787-5612)

고용을 지원합니다



1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

[지원대상]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조정이 불가피*한 사업주**

* 매출액 15%감소 요건을 한시적으로 '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'로 완화

**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 서비스업, 숙박업, 보건업(병·의원), 그 외 지방관서장이 코로나 19 관련 업종으로 인정하는 경우

[지원규모] 약 5,004억원 (지원금 일시적 상향)

[지원조건] 총 근로시간의 20% 이상 휴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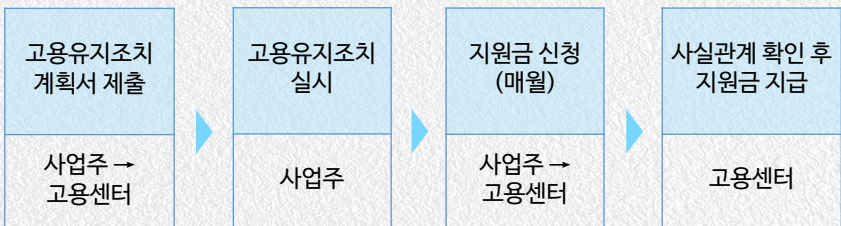
종류	지원조건	지원수준
휴업	근로시간조정, 교대제 개편, 휴업 등으로 역에 따른 1월간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의 20/10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행하고, 휴업수당 등을 지급한 사업주	사업주가 근로자에 지급한 휴업·휴직수당 등의 3/4(대기업 2/3) 지원 *1일6.6만원한도 (연180일까지)
휴직	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한 사업주	

[지원내용] 휴업·휴직 수당 지원비율 한시적 상향('20.2.1.~7.31.),
특별고용업종 지정

종류	일반업종 상향 (2.1~7.31)	특별고용지원업종 (3.16~9.15)
중소기업	2/3(66.7%) → 3/4(75%)	9/10(90%)
대기업	1/2(50%) → 2/3(66.7%)	2/3(66.7%)~3/4(75%)

* 여행업·관광숙박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(3.16.) [붙임 참조](#)

[신청절차] 지역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



[담당부처]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(상담센터 ☎1350)

붙임 관광업계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현황 및 지원내용

[지정 업종] 여행업, 관광숙박업, 관광운송업(공연업 포함 총 4개 업종지정)

업종	분류 기준	
여행업	업종코드	· N752(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)
	개별법	·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의 여행업이면서, 제4조에 따라 지자체장에게 등록된 업체
관광숙박업	업종코드	· 55101(호텔업), 55103(휴양콘도 운영업)
	개별법	·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관광숙박업이면서, 제4조에 따라 지자체장에게 등록된 업체 (호텔업, 휴양콘도 미니멈업)
관광운송업	업종코드	· 49232(전세버스 운송업), 50111(외항 여객운송업), 50121(내항 여객운송업), 50201(내륙 수상여객 및 화물운송업), 50202(항만 내 여객 운송업), 51100(항공 여객 운송업)
	개별법	·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2항 · 해운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종류별로 항로마다 해수부 장관의 면허를 취득한 업체 또는 동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여객운송사업 승인을 받은 업체 ·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관할관청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업체 · 항공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업체 및 동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업체

[주요 지원내용] 고용유지지원금(휴업·휴직수당), 직업훈련 등

구분		일반		특별고용지원 업종
고용유지지원금 (유급휴업·휴직)	지원 수준	우선지원대상기업 2/3(66.7%) 대규모기업 1/2(50%)~2/3(66.7%)		우선지원대상기업 90% 대규모기업 2/3(66.7%)~3/4(75%)
	지원 한도	1일 66,000원		1일 7만원(대규모기업 66,000원)
고용유지지원금 (무급휴업)	지원 요건	① 무급휴직 실시(90일)		① 무급휴직 실시(30일)
		② 무급휴직 전1년내유급휴업(3개월)		
직업훈련	사업주 훈련지원	지원한도	납부보험료의 100% (우선지원대상기업240%)	납부보험료의 130% (우선지원대상기업 300%)
		훈련비 지원단가	우선지원대상기업 100% 1,000인 미만 60% 1,000인 이상 40%	우선지원대상기업 150% 1,000인 미만 100% 1,000인 이상 90%
	국민내일배움카드	① 5년간 훈련비 300만원 지원 ② 훈련비 자부담율 15~55%		① 5년간 훈련비 400만원 지원 ② 훈련비자부담율0~20%
	훈련연장급여요건	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94조제1항 제1호~제4호 요건 모두 충족		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94조제1항 제1호만 충족
	생계비 대부한도	1명당 1천만원		1명당 2천만원

2 4대 사회보험 납부유예 및 감면지원

[지원대상] 코로나19로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·기업

[유형별 지원방안] 총괄표 참조 (납부유예의 경우 반드시 신청 필요)

	건강보험	국민연금	고용보험	산재보험
	3월 부과분 납부기한(~4.10.)			
납부 유예 (신청 시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전체가입자중확망자 (소득감소 요건 충족) • 3개월납부유예의확대 • 3~5월 부과분 (~4.15.까지 신청 시) * 3월부과분 既납부시 5월 환급 * 4~6월분은~5.15.까지신청시 유예가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30인 미만 사업장 • 3개월납부기한 연장 • 3~5월 부과분 (~5.10.까지 신청 시) * 단, 既납부한금액은 환급 불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30인 미만 사업장 + 1인 자영업자 + 특고 • 3개월 납부기한 연장 • 3~5월 부과분 (~5.10.까지 신청 시) * 단, 既납부한 금액은 환급 불가
감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보험료하위 20~40% *하위20% 既감면(50%) • 3개월 30% 감면 • 3~5월 부과분 * 3월감면분은 4월분 고지서에 합산하여 감면 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30인미만 사업장 + 1인 자영업자 + 특고 • 6개월 30% 감면 • 3~8월 부과분 * 3월 감면분은 4월분 고지서에 합산하여 감면
담당 부처	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	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	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	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
문의 (누리집)	국민건강보험공단 (☎1577-1000)	국민연금관리공단 (☎1355)	고용노동부상담센터 (☎1350)	근로복지공단 (☎1588-0075)
	https://www.nhis.or.kr	https://www.nps.or.kr	https://www.ei.g.o.kr	https://www.kcomwel.or.kr

세정을 지원합니다



[내국세, 지방세, 관세]

1 내국세 신고·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·체납처분 유예 등

[지원대상] 자영업자, 관광업 등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*
* 피해지역 납세자 및 의료·관광·여행·공연·음식·숙박업 등(사치성 유흥업소 제외)

[지원내용] 신고·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·체납처분 유예 등

- (신고·납부기한 연장) 법인세(3월 확정신고), 부가가치세(4월 예정신고) 등 신고·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
- (징수·체납처분 유예) 既 고지된 국세는 징수 유예(최대 9개월), 체납처분 집행은 최장 1년까지 유예
- (세무조사 연기) 원칙적으로 세무조사 착수 중단, 이미 세무조사를 사전통지 했거나 진행 중인 경우 납세자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 가능
- (전담대응반 운영) 본청 및 각 세무서에 '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' 설치

[시행시기] 즉시 시행

[담당부처] 국세청 징세과 및 관할 세무서 (☎국번 없이 126, 3번→2번)

2 지방세 신고·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·체납처분 유예 등

[지원대상] 확진(격리) 및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(의료, 여행, 공연, 유통, 숙박, 음식업 등 / 유흥업소 제외)

[지원내용] 신고·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·체납처분 유예 등

- (신고·납부 기한 연장) 6개월 이내, 추가 6개월 재연장 가능*
* 취득세, 지방소득세, 주민세 종업원분 등
- (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) 6개월 이내, 추가 6개월 재연장 가능
- (세무조사 유예) 지자체장이 정하는 기간까지

[시행시기] 행안부 → 지자체 지침 통보(2.5.)

[담당부처]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및 관할 지자체 세정과

3 관세 납기연장, 당일환급, 관세조사 유예 등

[지원대상] 중국내 공장폐쇄로 원부자재 수급 및 수출에 차질이 발생한 업체

[지원내용] 납기연장, 당일 관세환급, 관세조사 유예, 애로해소센터 운영 등

- (납기연장·분할납부) 납부계획서 제출 시 납기연장·분할납부를 최대 1년 범위 내 무담보 지원 (2.6.~)
 - (당일 관세환급) 피해기업이 신청한 관세 환급 건은 P/L(Paperless)로 전환 하여 신청 당일에 환급 결정. 지급 (2.6.~)
 - (관세조사 등 유예) 관세조사 대상 업체는 피해구제 마무리 시점까지 유예, 조사 중인 업체는 업체가 희망 시 연기 (2.6.~)
 - (애로해소센터 운영) 권역별 6개 세관 수출입기업 지원센터와 관세관을 통해 우리기업 피해상황 접수 후 관련 지원 시행 (즉시 시행)
- * 인천·서울·부산·대구·광주·평택에 「코로나19 통관애로 지원센터」 설치

[담당부처] 관세청 심사정책과 (☎ 042-481-7863, 국번 없이 125, 20번→2번)

보증을 지원합니다



1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례 및 우대보증

[대상]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영세소상공인 및 중소기업

[지원내용] 담보가 없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지 못하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·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서 대출받을 수 있게 함

	소상공인	피해기업	중소기업
지원한도	7천만원(5년 이내),	3억원	신용보증기금 문의
보증비율	상향조정(85%→100%)	상향조정(85%→95%)	상향조정(85%→95%)
보증료율	0.8%	1.0%	기존 보증료율 대비 0.2%p 우대
기타 지원			심사 간소화
문의	지역 신용보증재단 (☎1588-7365)	기술보증기금 (☎1544-1120)	신용보증기금 (☎1588-6565)

2 코로나19 피해기업 대출보증기한 연장

[대상]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보증 받은 기업

[지원내용] 코로나19 피해 기업들의 대출보증기한 연장

- (지역신보) '20.6.30. 이전 만기도래하는 일시상환 보증의 보증기한 연장(1년)
- (신용보증기금) '20.9.30. 이전 만기가 도래하는 모든 대출보증 전액 만기연장

[신청절차]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문의 및 신청 / 신용보증기금 전화 신청

(전국 주요 신용보증재단 영업점 연락처)

지역	전화번호	지역	전화번호	지역	전화번호
서울	1577-6119	부산	051-860-6600	강원	033-260-0001
대구	053-560-6300	인천	1577-3790	충남	041-530-3800
광주	062-950-0011	대전	042-380-3800	전남	061-729-0600
울산	052-289-2300	경기	1577-5900	경남	1644-2900
충북	043-249-5700	전북	063-230-3333	경북	054-474-7100

* 신용보증기금 (☎1588-6565)

경영은 지원하겠습니다

[기타 지원사항]



1 호텔등급평가 심사유예

[대상] 호텔업종

[지원내용] 감염병 경보해제 시까지 호텔등급평가 유예* (기존 등급 유효기간 연장)

* 매 3년마다 등급심사 필요 → '20년 약 352개 업체 대상 (총 심사비용 약 6.2억원)

[시행시기] 5월 중 (심사대상 업체 등급 유효기간 자동 연장)

[담당부처]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과 (☎044-203-2870~1)

2 유원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감면 추진

[대상] 유원시설업종

[지원내용] 유원시설 내 놀이기구 안전점검 수수료 50% 감면*

* 약 25백개 기구에 확인검사(1~20만원) 및 안전성검사(22~60만원) 필요

[시행시기] 6월 중 시행예정 ('20.1.31.~'20.12.31. 1년 치 소급하여 감면 적용)

[담당부처]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과 (☎044-203-2863, 2868)

3 관광업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종사자 교육지원

[대상] 여행업계 및 마이스업계

[지원내용] 업계종사자 역량강화 및 실무교육 제공

- (여행업) 휴업·휴직중인 여행업계 종사자 맞춤형 교육* 추진 (7.5천명)

* 분야별 직무 역량강화, 소규모 여행사 맞춤형 전문 교육 등

- (마이스)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역량강화 및 실무교육 지원 (200명)

* 3년 미만 경력자, 경력단절자, 마이스교육 수료자, 컨벤션기획 자격증 소지자 등 대상

[신청절차] 추후 확정 시 별도 안내

[담당부처] 문체부 융합관광산업과 (☎044-203-2879~2880)

4 관광기업지원센터 내 코로나19 상담창구 운영

- [대상] 관광벤처기업, 관광분야 유관기업 등 관광관련 사업자
- [지원내용] 코로나19 관련 부처별 지원대책 안내 및 경영상 애로사항 접수, 기존 관광기업지원센터 사업 중 지원 가능한 사업 상세 안내
- [담당기관] 한국관광공사 관광기업지원센터(☎02-729-9454/9494)

5 공항상업시설 임대료 감면 추가지원

- [대상] 공항상업시설* 입주기업
* 면세점, 음식점, 은행, 환전소, 편의점, 급유, 기내식 등 포함
- [지원내용] 공항상업시설 중소기업·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율을 50%로 상향(25%→50%)하고, 대·중견기업 임대료 20% 신규 감면
- [지원기간] 공항이용 여객수가 전년 동월대비 60%도달 시까지 최대 6개월 한시적용 (3~8월, 3월분 소급)
- [담당기관] 인천공항공사(☎1577-2600), 한국공항공사(☎1661-2626)

6 카드사 혜택 확대

- [대상] 코로나19 피해 우려 영세·중소가맹점 (연매출 5억원 이하)
- [지원내용] 무이자할부 등 마케팅지원 및 사업자금 대출금리 인하(카드사별 상이)
- * (C사) 무이자할부 서비스 지원, 결제대금 6개월간 청구유예, 일시불 이용건 분할결제
- * (D사) 가맹점주 사업자금 대출금리 인하, 소비영향 분석 지원, 가맹점 위생물품 제공 등
- [신청절차] 각 카드사 문의 (신한, 국민, 삼성, 현대, 비씨, 하나, 우리, 롯데)
- * 신한카드(1544-0887), 국민카드(1588-1688), 삼성카드(1588-8700), 현대카드(1577-6000), 비씨카드(1588-4000), 하나카드(1800-1111), 우리카드(1588-9955), 롯데카드(1588-8100)



문화체육관광부

